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20일,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5.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교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조경수·마와 같이 그 재배과정에서 심거나 캐내기 위해 수시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임산물 재배의 경우에는 산채류 등 다른 임산물과 달리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만 재배가 가능하여 임산물 재배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산지에서 과수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거쳐야만 가능하여 기존 산림경영을 유지하면서 과수류 재배를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없으며, 산지의 본래적 이용형태인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행위나 재해방지·응급복구 등과 같은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도 예외 없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재해복구와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 「광업법」 개정에 따라 광업권은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경우 탐사권자와 채굴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과수류의 임간재배(林間栽培)를 일정요건 하에서 허용하도록 하고,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채석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재금)

가. 산지전용에서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를 제외

개정안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산지전용이라는 정의에서 임업경영활동으로 조경수·마 등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를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나. 허가·신고 없는 산지일시사용 도입 및 재해방지 조치 등

개정안은 산지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재해복구 및 임업경영 지원을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선관주의의무는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하여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로 인한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다만, 법제적 보완사항으로 안 제37조제1항 및 제7항은 산림청장 등

인허가권자가 재해방지를 위한 조사·점검·검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제15조의2제10항 또는 제25조의2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추가하고 있는데, 안 제25조의2 제2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므로 안 제37조제1항 및 제7항의 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25조의2제1항”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음.

다.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의 확대

개정안은 ‘과수류의 임간재배’와 ‘지뢰제거 등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임업인의 소득구조 다변화와 식량자원 확보에 기여하고, 원활한 법률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임간재배(林間栽培)’는 법률에서 직접 정의되지 않아 용어의 뜻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안 제15조의2제4항 제4호의2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임간재배의 구체적 범위를 다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 서류 및 자료의 보관기간 연장

개정안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 서류 및 자료의 보관기간을 기존 3년의 범위에서 이 법 시행규칙 상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의 유효

기간인 5년에 맞추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마.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

현행법 제52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 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산림청장의 시·도지사 권한위임 사무에 대한 시·도의 실질적 의사결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산림청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권한과 ‘3만㎡ 미만 보전산지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예정이며, 이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어 권한 위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바. 토석채취허가 등 신청 시 동의대상에서 탐사권자를 제외

개정안은 토석채취허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를 제외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